2016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6년 6월 23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 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박 이 락 금융결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4호 -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먼저 가계, 기업,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금융시장 인프라 등 각 부문별로 안정상황을 평가하였으며, 각 부문의 특이동향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통해,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안분석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음.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계부문에서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 관련 잠재리스크,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간의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음. 이어 기업부문에서는 한계기업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기부진에 따른 국내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은행의 기업여신 부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후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하였음.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코코본드(CoCo bond)의 발행동향과 시사점, 증권회사의 우발채무관련 잠재리스크,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중국 등 신흥시장국 경기둔화, 저유가 지속, 선진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금융안정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금융시장 부문에서는 저금리 장기화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경향이 강화되면서 금융시장 내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금융시장별로 시장 참가자들의 위험 추구 행태 여부를 점검하였음. 한편 외환건전성 부문에서는 글로벌 은행의 신용위험 증대 배경과 향후 재연 가능성을 살펴보았음.

금융시장 인프라 부문에서는 비금융회사의 신종 전자지급서비스 제공 현황과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P2P 금융의 현황과 잠재리스크 등을 점검하였고, 부록에 는 거시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 의사록을 수록하였음.

그 다음으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각 부문별 잠재 위험요 인을 금융안정 개관에 충분히 요약 기술하여 동 보고서의 조기경보 기능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가계 재무건전성의 경우 기존 지표로는 관련 리스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잠재적리스크가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에 유의하여 좀 더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기업 및 은행부문의 건전성의 경우에도 저금리기조 장기화,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잠재리스크요소를 충분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부 위원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리스크 존재 가능성을 적절히 분석하였다는 의 견을 밝힌 후, 다만 포괄적·양적 접근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개별 금융시장 또는 금융상품에서 비롯되는 잠재리스크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IMF 내부 분석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특정 섹터(sector)에 집중하여 해당 섹터의 리스크와 다른 시장과의 연계성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일부 위원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금융회사의 행태 측면에서도 분석하여 적절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소가 크지 않더라도 시장 구조 측면에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축적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예 를 들어 최근 크게 확대되고 있는 MBS의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로 신용 위험이 집중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저금리 장기화, 새로운 금융상품 시장 확대 등으로 금융순환의 내용이 상당히 바뀌고 있어 자금이 집중되는 최종 종착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가계부채,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등과 관련한 취약요소 또는 잠재리스크를 포착하기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 관점에서 위험요소를 포착하는 것은 미시건전성 정책당국과 구분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며 금융안정보고서의 집 필 목적이라고 언급하고, 금융의 경기순응성 및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금융불균형 또는 금융순환과 관련한 이슈를 동 보고서에서 다루어 줄 것을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고,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제안된 의견들은 향후 금융안정보고서 집필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는 주요 현안을 잘 정리한 가운데 특히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해주었다고평가한 후, 앞으로는 저금리기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중장기적으로 핀테크(fintech) 등과 같은 금융 여건 변화가 금융기관의 행태와 경영성과에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금융여건 변화가 은행, 증권,보험 등 금융기관 개별 권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차원에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분석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저금리에 따른 리스크 테이킹 행태변화 분석과 더불어 앞으로 금융기관 상호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상호연계 구조의 구체적 형태를 추적하면서 이에 따른 거시 위험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또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산 측면에서 리스크 형성구조,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 위험과 해외 신흥시장 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가장 큰 잠재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후, 전수조사 자료는 가계의 부채 측면의 정보만 나타내고 가계부문 전체를 볼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매우 부족한 만큼 앞으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기존 지표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잠재리스크 파악을 위하여 새로운 기법이나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는 한편, 금융기관 상호연계 구조와 새로운 관점에서의 리스크 요인 파악을 위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6년 6월)(안)(생략)

<의안 제25호 - 지급결제제도 운영 · 관리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제28조 제10호 및 제81조에 의거 차액결 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담보납입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결제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지난 6월 20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납입비율 상향조정 계획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당행이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개편을 2014년부터 준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은행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개편 방안을 공유해 왔고 최근에도 협의회를 통해 금번 납입담보비율 상향조정 안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를 잘 숙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담보비율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폭을 두는 이유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참가 은행들이 순이체한도 소진율 등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잘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가산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담보비율을 순이체한도의 30%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그동안 이것이 실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으며. 강화

된 국제기준 도입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감안하고 앞으로 국제기 구의 점검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향조정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다른 일부 위원은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을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경우 운영기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며, RP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단기자금시장 개편논의가 잘 마무리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추가 지정에 대해 운영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기관의업무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기관간RP거래와 관련하여 앞으로 단기자금시장 개편 논의시 행내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기관간RP 결제시스템을 당행의 중요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중요 시스템의 지정 등 당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는 「한국은 행법」 제8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통위 규정인「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개정(안)(생략)